

**한국영화배급협회
(2018. 8. 1 기준)**

- 가. 신탁계약 약관
- 나. 이용계약 약관
- 다. 사용료 징수규정
- 라. 사용료 분배규정
- 마. 관리수수료 규정

신탁계약 약관

2013.09.11.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영상저작물(영화 및 비디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저작권 보호와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진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사단법인 한국영화배급협회(이하 “수탁자”라 한다) 사이에 저작권 신탁계약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작권의 신탁) ① 위탁자는 현재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가지게 될 영상저작물에 대한 제4조에 규정된 권리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이를 관리하고 이로 인하여 얻어진 사용료 등의 수익을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② 위탁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일부를 신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권리를 신탁하고자 하는 자는 신탁계약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신탁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위탁자에게 신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저작권의 신탁 기간) ① 신탁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단, 위탁자의 저작권 보유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계약 기간에 대한 상호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계약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도 계약기간 중에 수탁자에 의해 진행된 이용허락 기간은 보장되어야 한다.

제4조(저작권의 관리범위)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위탁자로부터 저작권(이하 “신탁저작권”이라 한다.)을 수탁하여 관리한다.

1. 공연권
2. 공중송신권(방송, 전송, 그 밖의 공중송신)
3. 복제권
4. 배포권
5. 그 밖에 저작권법상 부여되는 권리

제5조(업무관할 및 재 위탁) ① 수탁자는 대한민국에서의 신탁 저작권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수탁자는 외국 지역에 대한 신탁저작권 관리 업무를 외국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등에 재 위탁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외국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저작물을 수탁 관리 할 수 있다.

제6조(저작권의 확인 보증)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한 모든 저작권의 적법한 권리자임과 그 대상인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음을 보증한다.

② 수탁자는 전항에서 위탁자가 확인 보증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탁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저작물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수탁자는 그 업무를 행하는 지역에서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

하고 저작물 사용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및 분배 규정에 따라 징수하고 분배한다.

제8조(관리수수료 공제 등) ① 수탁자는 신탁저작권 관리에서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관리 수수료를 사용료 분배 시 공제한다.

② 수탁자는 저작물 사용료 및 모든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별도규정에 없는 기타수입을 업무수행 경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제9조(신탁저작권관리에 따른 경비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해당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저작권에 대한 과세
2. 신탁저작권의 등록에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3. 신탁저작권의 귀속에 관련한 분쟁에 발생한 비용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비는 신탁저작권의 관리에서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중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0조(신탁저작권의 양도 및 질권 설정) 위탁자가 저작물 사용료의 분배 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 허락 및 분배 유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신탁저작권의 이용허락 및 사용료의 징수 또는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1. 신탁저작권의 침해 또는 저작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소제기 또는 수탁자에 대해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2. 저작물 사용료에 대하여 분배 대상 또는 분배율 등이 불명확한 경우.
3. 위탁자가 신고한 저작물의 귀속 등에 의문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소권) 수탁자는 제2조 각항에 해당하는 신탁저작권 관리와 관련하여 침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침해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제반 사항의 통지 등) ①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한 제반 사항의 통지는 위탁자가 신고한 주소지로 한다. 만약, 위탁자가 외국에 거주할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 주소지로 한다.

② 수탁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송금과 그 밖의 통지를 보류할 수 있다.

1.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신고가 되지 않을 때
2. 위탁자로부터 신고된 주소로 보낸 최고, 그 밖의 통지가 계속해서 3회 이상 도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때
3. 수탁자가 송금한 금액이 위탁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때

제14조(위탁자의 신고의무)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고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위탁자가 새로운 저작물을 저작하였거나 제4조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2. 위탁자가 신탁하고 있는 권리의 상실 또는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경우.
3. 신탁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 인감을 분실한 경우.
4. 위탁자의 법인 명칭, 대표자, 대리인, 주소, 송금 처 등이 변경된 경우.
5. 기타 신탁저작권 관리에 지장이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자가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15조(신탁 계약의 승계) ①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위탁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위탁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을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위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 또는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상속인 또는 해당 권리를 승계하는 법인은 위탁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하는 법인은 위탁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을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상속인이 복수인 경우 상속인 중에서 1명을 대표자로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신탁 계약의 해지)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신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의 신탁 저작권이 소멸 또는 상실 되었을 경우.
 2. 위탁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위탁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저작권 신탁 관리에 따른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위탁자의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비용은 귀책사유를 제공한 측에서 책임을 진다.
- ④ 신탁계약에 대한 해지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해지의 효력은 계약 상대방이 해지 통보를 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권리보호기간의 만료로 해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신탁 계약의 종료) 수탁자는 신탁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효력 발생 후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신탁증서를 반환하여 신탁저작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180일 이내에 해당 저작물 사용료 미지급분 및 결산서를 위탁자에게 지급 및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신탁 계약 약관의 변경 통지) ① 수탁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 약관을 변경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탁자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위탁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약관 변경에 이의가 있는 위탁자는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기간 동안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제1항의 변경사항을 위탁자가 승낙한 것으로 본다.

- 제19조(배상책임)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액을 신탁저작권 관리에서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중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20조(약관의 개정) 이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세칙의 제정) 이 약관이 정한 것 외에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약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탁법, 저작권법 및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재판관할) 이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신탁계약에 관한 소송의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용계약 약관

2013.09.11.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사단법인 한국영화배급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협회가 신탁 받아 관리하는 영상저작물(영화 및 비디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준수해야 할 영상저작물 이용 방법 및 이용허락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체결 방식) ① 사용자는 협회와 문서로서 영상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회는 제2항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작물 사용승인을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② 협회는 사용자의 영상 저작물 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1. 법령 및 협회의 각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2. 사용자가 영상 저작물의 사용에 있어 협회 이외의 관리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독점적 또는 이와 유사한 이용 관계를 맺음으로써 타 이용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3. 협회에 저작물 사용료를 체납중인 자 또는 그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사용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4. 기타 상 관례에 비추어 거래의 질서를 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조(이용허락) 이용 허락의 조건은 협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사용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용료 징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사용의 범위) ① 사용자는 협회가 이용 허락한 영상 저작물을 협회의 허락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변환, 가공할 수 없으며 이용 허락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방법, 사용지역 등에 변경이 생길 경우 협회에 즉시 통보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상저작물의 사용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수 없다.

제5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영상저작물 사용료로 협회의 저작물사용료 징수 규정에서 정한 요율 또는 금액을 납부한다.

② 협회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변경하여 사용료의 증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는 사용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된 사용료 징수규정은 변경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대해 적용한다.

제6조(신탁계약 해지자 공고) ① 협회와 신탁계약을 해지한 위탁자가 있을 경우, 협회는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dak.or.kr>)에 해지된 저작물명과 저작권리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와 포괄적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해지된 저작물명과 저작자명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실태의 보고) ① 사용자는 사용료 산정 및 분배에 필요한 자료로서 매월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 저작물에 대한 사용 내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필요에 의한 사용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협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 1. 사용자가 사용허락을 받은 영상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료 납부 후 30일 이내에 사용료 반환을 청구한 때
- 2.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납부하던 사용자가 영상저작물 사용을 중지하였으나 자동이체 해지 등을 하지 않아 사용료가 잘못 납부되어 영상저작물 사용중지 후 60일 이내에 사용료 반환을 청구한 때

제9조(연체가산금) 사용자는 계약상 약정된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가 연체된 경우 최초 1개월은 사용료의 5%, 그 다음달로부터 사용료 납부 시까지 매월 사용료의 1.2%씩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협회 또는 사용자는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2. 제2조 제2항의 각호에서 규정하는 경우
 - 3. 제7조 각 항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때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협회에 신고 된 주소지 또는 저작물 이용 장소에 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3회 이상 수령 거부, 폐문부재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에는 해지 통보된 것으로 본다.
- ③ 사용자는 협회로부터 사용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협회의 신탁저작물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해지 후 신탁저작물 사용을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1조(침해 시 조치) ① 사용자가 사용계약의 범위를 초과하여 협회가 관리하는 신탁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이용허락 기간에 관계없이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사용계약의 범위를 초과하는 침해행위가 재발할 시에는, 사용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1년간 사용 승인을 보류한다.

제12조(약관의 개정) 이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세칙의 제정) 이 약관이 정한 것 외에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4조(재판관할) 이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이용허락계약에 관한 소송의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 9. 11)

이 약관은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용료 징수규정

2013.09.11.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영화배급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영화 및 비디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자에게 이용 허락하는 경우에 징수할 사용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체결) 협회가 관리하는 영상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와 문서로 저작물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약관) 본 규정에 따른 영상저작물 이용계약의 약관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이용구분) 협회가 관리하는 영상저작물의 이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공연
2. 공중송신(방송, 전송, 그 밖의 공중송신)
3. 복제
4. 배포
5. 기타 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에 따른 이용

제5조(관리비율) “관리비율”이라 함은 사용자가 이용하는 저작물 중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을 말한다.

제 2 장 공연 사용료

제6조(비디오물감상실에서의 공연) 비디오물감상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6호 가목)에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영상저작물이 상영되는 경우 방 1개당 공연 사용료는 다음의 기준단가에 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위: 원/월)

구분(방 면적)	A급 지역	B급 지역	C급 지역
6.6㎡미만	5,500	5,000	4,500
6.6~13.2㎡미만	6,500	6,000	5,500
13.2㎡이상	7,500	7,000	6,500

비고1) 각 급 지역의 구분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규정에서 같음).

- A급 지역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B급 지역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C급 지역 : 그 밖의 지역

제7조(목욕장업소에서의 공연) 목욕장업소(공중위생법 제2조제3호 나목)에서 영상저작물을 공연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의 기준단가로 산정한다.

(단위 : 원/월)

면적 (㎡)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 공연횟수			
	~ 20회	~ 30회	~ 40회	41회 ~
~ 66	60,000	65,000	70,000	75,000
~ 132	65,000	70,000	75,000	80,000
133 ~	70,000	75,000	80,000	85,000

비고1) 목욕장업소(공중위생법제2조제3호 나목) : 맥반석·황토·옥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제8조(도서관 등에서의 공연) ① 도서관 시설에서 협회가 관리하는 영상저작물(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영상저작물에 한함)을 공연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집단상영(단체관람) 시

(단위: 원/월)

좌석 수	상영 횟수		
	1~5회	6~10회	11회~
50이하	30,000	60,000	90,000
50~100	45,000	75,000	105,000
101~200	60,000	90,000	120,000
201~300	75,000	105,000	135,000
301~400	90,000	120,000	150,000
401~	105,000	135,000	165,000

비고1) 행정구역상 거주인원 1만 명 이하의 읍면이나 도서·벽지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2. 도서관 공연목적 구입 시

(판매용 영상저작물 가격 × 3) × 최소구매수량

비고1) 이 호에 의하여 도서관 전용영상으로 구입하는 경우 제1호의 사용료는 면제된다.

비고2) 최소구매수량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도서관의 규모와 이용실태를 고려한다.

3.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목적 공연 등의 경우에는 이 규정 제14조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도서관 이외에 저작권법시행령 제11조제8호의 시설에서 협회가 관리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영상저작물에 한함)을 공연하는 경우의 사용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9조(복합게임유통제공업소에서의공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8호에 따른 업소에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영상저작물이 상영되는 경우 공연사용료는 다음의 기준단가에 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위: 원/월)

구 분	기준단가	비 고
감상설비	2,000원	
감상 설비 수 x 2,000원		

제10조(숙박업소에서의 공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숙박업소에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영상저작물이 상영되는 경우 공연사용료는 다음의 기준단가에 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위 : 원/월)

감상설비 객실 수	A급지역	B급지역	C급지역
~ 10	16,000	14,000	12,000
11 ~ 50	21,000	19,000	17,000
51 ~	26,000	24,000	22,000

제11조(공연사용료의 예외) 영상저작물을 제공(복제·배포 또는 공중송신)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로부터 해당 감상설비에서의 공연에 대한 허락을 포괄하여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장 영상저작물의 공중송신

제12조(전송 사용료)

[영화저작물 당 단가 * 0.6 * 이용횟수]

영화 저작물 당 단가표

(단위 :원)

구분	분 류	단 가	비 고
VOD	프리미엄 최신작	10,000	각 구분은 개봉일, 인지도, 부가영상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계약 시정함.
	극장개봉 6개월 미만	4,500	
	극장개봉 1년 미만	2,000	
IPTV	프리미엄 최신작	10,000	
	극장개봉 3개월 미만	4,000	
	일반영화	1,000	
웹하드	최신 제휴 영화	4,000	
	극장개봉 6개월 미만	2,000	
	일반영화	700	
VOD 스트리밍	극장 개봉 최신작	4,500	
	극장개봉 3개월 미만	3,500	
	극장개봉 6개월 미만	2,000	
	일반영화	1,000	

제13조(전송사용료의 예외) 사용료가 없이 총 재생 시간이 한 편당 3분을 넘지 않으며, 사전 신고할 경우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전송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영화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영화 파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 하고자 하는 영화와 동일한 영화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
2. 협회의 위탁자가 스스로 창작한 작품 또는 관리 저작물을 위탁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는 경우
3. 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영화 저작물에 관계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4장 보 칙

제14조(기타 사용료)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 협회는 우선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개월 이내에 사용자와 사용료를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를 반영한 징수규정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받은 규정에 의하여 정산한다.

제15조(규정의 예외) 저작권자와 사전 직접계약을 통해 허락받은 이용에 대해서는 사용료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6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시행세칙) 이 규정이 정한 것 외에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2013. 9. 11)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용료 분배규정

2013.09.1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영화배급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신탁저작권을 관리하여 얻어진 사용료(영상저작물 불법복제 및 유통단속으로 얻어진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의 분배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배대상자) 분배 대상자는 협회의 신탁계약 약관에 의한 위탁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로 한다.

제3조(분배자료) 사용료의 분배는 사용자가 구매한 작품수량 및 사용업소의 사용횟수 등에 관한 보고서, 협회가 조사한 사용명세 등의 분배자료에 의하여 분배한다.

제4조(분배대상 저작물) 분배대상저작물은 협회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중 분배대상사용료의 징수기간에 사용된 저작물이나 징수대상이 된 저작물로 한다.

제5조(분배 시기 및 분배 대상 사용료) ① 협회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의 분배 시기 및 분배 대상 사용료는 익년 3월 이내로 한다.

② 협회의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협회의 총 운영비가 인가받은 수수료의 사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신탁관리 사업 확대 및 조기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많은 투자비용이 필요한 경우)으로 분배시기에 분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분배시기를 정할 수 있다.

제6조 (분배대상자의 확정방법 등) ① 분배대상자는 협회와 신탁계약 체결 과 함께 보유 권리에 대한 작품신고를 한자로 확정한다.

② 협회는 작품신고가 되어있지 않아서 협회 저작물관리 D/B에 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 권리가 없는 것으로 인지하며 향후 권리관계 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하며, 확보 되는 시점을 분배 시점으로 한다.

제7조 (분배대상자를 확정하는 저작물 자료) 각 분배기에 있어서 분배대상자의 확정은 분배기로부터 10일전까지 제출된 저작물 자료에 의한다.

제8조 (분배계산방법) ① 사용료 징수규정 제5조에 의한 감상실 공연에 의한 분배방식은 다음과 같다.

각 저작물에 대한 분배액	
저작물 이용 횟수(70%) + 저작물 구매 수량(30%)	
저작물 이용 횟수	저작물의 총 사용 횟수 / 전체 사용 횟수 x 월별 징수금액 x 0.7
저작물 구매 수량	저작물의 총 구매 횟수 / 전체 구매 횟수 x 월별 징수금액 x 0.3

② 사용료 징수규정 제5조를 제외한 공연에 의한 분배 방식은 다음과 같다.

기타 공연에 의한 분배액	
총 공연 횟수 / 전체 공연 횟수 x 월별 징수금액	

제9조 (분배의 조정) 사용료가 잘못 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분배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차기 사용료 분배 시 그 차액을 분배받을 사용료로부터 정산한 후 분배할 수 있다.

제10조(분배금) ① 협회가 위탁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에서 관리수수료를 공제하고 전기이월 분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개별 위탁자에게 분배할 분배금이 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령을 희망하지 않는 한 차기 분배금에 가산한다.

제11조 (기타 분배방법) ① 본 규정 각 조항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나 적절한 분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산출방법, 징수한 사용료액, 사용된 저작물 횟수, 유사한 사용매체의 분배자료 등을 참작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 보고 후 분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분배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 보고 후 분배한다.

③ 사용료 분배 시 10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고, 절사된 분배 차액금은 분배하지 않으며, 분배차액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단속기금으로 이관한다.

제12조(이의 신청) ① 위탁자가 저작물 사용료 분배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신탁저작권이 사용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협회에 직접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 신청은 협회의 “사용료분배 이의신청서”에 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이의 신청 접수 후 9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세칙의 제정) 이 규정이 정한 것 외에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2013. 9. 11)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관리수수료 규정

2013.09.1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영화배급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신탁저작권을 관리함에 있어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이하 “관리수수료”라 한다)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관리 수수료) 협회는 저작물 사용료 분배 시 다음에 정한 요율에 따라 관리 수수료를 징수한다.

- ① 사용료 징수 규정에서 정한 사용료의 40% 이내
- ② 영상 저작물 불법 복제 및 유통 단속 활동으로 얻어진 손해 배상금 중 민. 형사상의 소송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내

제3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2013. 9. 11)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